

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(2023. 12. 15.)에서 의결된 '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'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12월 18일

고흥군의회 의장  재향

고흥군의회 규칙 제 2023-56 호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”을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”를 “공무원이 아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타 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

제3조 중 “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허가절차)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(이하 “출장자”라 한다)는 긴급

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과장 (이하 “사무과장” 이라 한다)에게 요청해야 한다.

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비용이 드는”을 “소요되는”으로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겸임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3.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

제5조 중 “고흥군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”을 “실시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허가권의 위임)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</u> 사람이 <u>고흥군의회(이하 “의</u> <u>회”라 한다)의 예산으로 공무</u> <u>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</u> <u>되거나 출장하는 경우. 이 경우</u> <u>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</u> <u>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분</u> <u>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3조(허가권자) <u>공무국외출장은 고</u> <u>흥군의회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</u> 이 허가한다. 다만, 파견 중인 공 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 장이 허가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</u> <u>출장 규칙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공무원이 아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<u>기타 고흥군의회 의장(이하</u> <u>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</u> <u>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허가권자)-----<u>의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의2(허가절차) ① <u>공무국외출</u> <u>장을 하려는 자(이하 “출장자”라</u></p>

한다)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이라 한다)에게 요청해야 한다.

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,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 제4조제7항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겸임한다.

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공무국외출장에 비용이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(이하 “공무국외출장자”라 한다)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)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

2.·3. (생략)

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하며,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)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

1. ----- 소요되는 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3.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

<삭 제>

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.

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양교육)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고흥군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,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출장자의 경력,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5조(소양교육) -----
----- 실시하는 -----

제7조의2(허가권의 위임)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